

지정번호 : 제 호

인증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 :

2. 대표자 : (법인등록번호)

3. 소재지 :

4. 인증업무의 범위 :

5. 유효기간 :

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
· 제35조제2항 및 「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
·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9조제2항·제43조에 따라 유기식품(무항생
제수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)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

직 인

(뒤쪽)

연월일	구분	당초	변경	확인(날인)